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 심 사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「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4. 12(목) 정문섭 의원 외 2인

나. 회부일자 : 2012. 4. 19(목)

다. 상정일자 : 2012. 4. 26(목)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정문섭 의원)

○ 내실있고 생산적인 의회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개정·보완하고자 함.

○ 의장단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9조)

○ ‘3분자유발언’을 ‘5분자유발언’으로 개정(안 제33조의2)

○ 군정질문 일문일답 및 일괄질문·일괄답변 병행가능과 군정 질문 방법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세부규정 신설
(안 제66조2)

○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 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##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##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